



613-713,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
TEL : 154-40-009 FAX : 051-623-4322
(담당자 : 황승현 대리)

문서번호 : 고객-201402-26
시행일자 : 2014-02-28

수신: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업체
참조:

제목: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관련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팀-221(14.02.11)호의 '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관련 협조 요청'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- 아 래 --

가. 시행근거
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 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(2014.02.11일)

나. 환급대상

구 분		적 용 대 상	비 고
열병합	자 가 용	㉠가스엔진, 가스터빈, 연료전지, 스팀터빈용 보일러	100MW
	집단에너지, 구역전기사업자	㉠가스엔진, 가스터빈, 연료전지, 스팀터빈용 보일러	이하
가스냉·난방		㉠GHP, 흡수식냉온수기, 흡수식 냉동기용 보일러	

다. 환급기간 : 2014.1.1 ~ 2016.12.31

- 2014년 1월 사용분 3월(납기:3/17)고지시 환급액 소급적용.
- 2월 사용분 3월(납기:3/17) 고지시 환급.

라. 환급액 : 24,242원/톤 (1Kg = 54.6MJ)

- 예) 청구량 939,085.0720MJ 환급액 산정방식
- $(939,085.0720 \div 54.6) \div 1,000 = 17.199$ 톤 (소숫점 3째자리 반올림)
 - $17.199 \times 24,242 = 416,939$ (원 미만 올림).

[끝]

